

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



식품의약품안전처

식품의약품안전처



수신자 (유)한국비엠에스제약, 대표:김진영 귀하 (우 06178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4 12층(대치동,해성1빌딩))

(경유)

제목 의약품 수입입품목 허가사항 변경허가[(유)한국비엠에스제약-탁솔주 (파클리탁셀)]

1. 귀사에서 2019.06.03.자로 우리 처에 제출하신 의약품 수입품목 "탁솔주(파클리탁셀)"(접수번호 : 20190094838)의 허가사항 변경 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「약사법」 제 4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허가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「약사법」등 관계 법규를 준수하시기 바라며, 허가증은 우리 처 고객지원담당관에서 교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(고객지원담당관 연락처 : 043-719-1010~14, 팩스 : 043-719-1000).

제품명	변경항목	변경허가내용	비고
탁솔주 (파클리탁셀)	사용상의 주의사항	- '4. 이상반응 11) 기타' 항 내용 추가	사전검토 완료

2. 아울러 동 허가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3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처에 불임의 '민원처리결과 이의신청서' 양식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- 붙임 1. 품목허가증 1부(고객지원담당관→신청인)(별첨)
2. 민원처리결과 이의신청서. 끝.

식품의약품안전처



주무관 **박병길**

연구관 **도원임**

전결 06.28
기술서기관 **오정원**

시행 **융복합혁신제품지원단** (2019.06.28) 접수 20190094838 (2019.06.03)
(의약품)-5622

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,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/ <http://www.mfds.go.kr>
전화 043-719-2314 전송 043-719-2300 / vitac@korea.kr / 비공개

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1호서식]

■ 수수료: 없음



거부처분 이의신청서

제출서류: 없음

접수번호:

접수일:

처리기간: 10일

1. 신청인 정보

신청인

이름(법인명):

연락처:

주소(소재지):

2. 신청 내용

이의신청 대상
민원사항

거부처분을 받은 날

거부처분의 내용

이의신청의
취지 및 이유

3. 서명 및 날인

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귀 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접수기관 귀하

처리절차

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절지(80g/㎡)]